

#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8

제출년월일 : 2002. 4.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제안이유

-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칙안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대청소등 청결유지 책무를 정함 (안 제3조의 2).
- 나. 청결유지 조치기간 및 대상을 정함 (안 제3조의3 신설).
- 다.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절차와 미이행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의4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제63조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04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2. 2. 21. ~ 2002. 3. 3.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청결유지 명령”을 “청결유지 책무”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당해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청결유지 이행) ①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3조의4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청 소 과           |
|-------------|----------------|-----------------|
| 임<br>안<br>자 | 실·과장<br>직위·성명  | 청소과장<br>이봉규     |
|             | 담당·팀장<br>직위·성명 | 청소지도담당<br>김창윤   |
|             | 담당자<br>성명·전화   | 김기창<br>(행정2252) |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의2 (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과을 해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청소</li> <li>2. 적치된 폐기물의 수거·처리</li> </ol> <p>② 전항에 의한 명령의 경우에는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명시하여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40px;"><u>&lt;신 설&gt;</u></p> | <p>제3조의2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조의3 (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li> <li>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li> <li>3. 토지·건물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li> <li>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li> </ol> |

## 신·구 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신·설〉</u> | <p>제3조의4 (청결유지 이행) ①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p> |